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5797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피 고 1. 주식회사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749,589원 및 그 중 152,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20. 1. 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9. 14.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HVAC installaion Work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20,000,000원, 계약보증금 152,000,000원, 공사기간 2018. 9. 17.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제1항 (계약보증금 귀속절차)

① 제(1)항 또는 제34조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은 원고보조참가인에 속하며, 이 경우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액 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제1항 (원고보조참가인 등에 의한 계약 해지)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4.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피고 회사는 2018. 9. 1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52,000,000원, 보험기간 2018. 9. 14.부터 2019. 4. 12.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보증금의 현실적인 지급에 갈음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9. 8. 15.부터 2019. 9. 13.까지는 연 6%이고, 2019. 9. 14.부터는 연 9%이다.

제3조 (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과 보증인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4조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5. 6.자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6개 업체(일명: G, H, I, J, K, L)에게 합계 295,511,09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기성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하도급 업체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5.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하도급 업체들에게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95,511,090원을 대신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2019. 6. 20.까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295,511,09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지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하도급 업체들에게 295,511,09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돈을 2019. 6. 2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5. 6.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5. 17. 피고 회사에게 2019. 5. 22.까지 위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즉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갑가 제11호증).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하도급 업체들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사.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1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1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회사는 2019. 5. 6.자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6개 업체들에게 합계 295,511,09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기성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하도급 업체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5.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하도급 업체들에게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95,511,090원을 대신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2019. 6. 20.까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295,511,09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지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295,511,09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돈을 2019. 6. 20.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5. 6.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5. 17. 피고 회사에게 2019. 5. 22.까지 위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즉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해지통보에 따라 2019. 5. 22.까지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따른 해지시점인 2019. 5. 22. 이 사건 공사계약 제3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에 정한 계약보증금 152,000,000원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였고,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에 갈음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증내용은 위 계약보증금 152,000,000원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지됨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계약보증금 15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가 2019. 8. 1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1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1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2019. 9.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749,589원, 합계 152,749,589원 및 그 중 구상금의 원금인 152,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1.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지연 및 잦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2019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2019. 5. 22. 후에도 피고 회사의 일부 직원이 201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다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HVAC(공기조화 설비) 등의 시운전 과정에 참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와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성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원고보조참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임의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보조참가인이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하도급법상 발주자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잔여 기성공사대금 약 2억 6,0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약 2억 2,00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